

| | | | | | |
|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|
| 관리번호 | []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[]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(연말정산용) ([]소득자 보관용 []발행자 보관용 []발행자 보고용) | 소득자 구분 | | | |
| ① 귀속 연도 | | 2024 년 | 거주구분 | 거주자 / 비거주자 | |
| | | 내·외국인 | 내국인 / 외국인 | | |
| | | 거주지국 | 대한민국 | 거주지국코드 | KR |

| | 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징수 의무자 | ② 종교단체명 함께하는교회 | ③ 대표자(성명) 이*** | ④ 사업자등록(고유)번호 617-82-76153 |
| | ⑤ 주민(법인)등록번호 | ⑥ 소재지(주소) | |

| | |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소득자 | ⑦ 성명 이*** | ⑧ 주민등록번호 690212-***** |
| | ⑨ 주소 | |

| | | | | | |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종교인 소득 | ⑩ 발생처 구분 | ⑪ 종교단체명 | ⑫ 사업자등록(고유)번호 | ⑬ 발생기간 (연·월·일) | ⑭ 지급액 (비과세소득 제외) | ⑮ 비과세 소득 |
| | 주(현) | | | 2024-01-01 ~ 2024-12-31 | 34,600,000 | 4,800,000 |
| | 종(전) | | | ~ | | |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소득금액 | ⑯ 종교인소득(⑭) | ⑰ 필요경비 | ⑱ 소득금액(⑯-⑰) |
| | 34,600,000 | 23,300,000 | 11,300,000 |

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⑲ 종교인소득 소득금액(⑱) | | 11,300,000 | | 구분 | 소득세 | 지방소득세 | 농어촌특별세 | 계 | | |
| 인적공제 | ⑳ 본인 | 1,500,000 | ㉑ 소득공제등 종합한도 초과액 | 0 | ㉒ 결정세액 | 193,995 | 19,399 | 0 | 213,394 | |
| | ㉓ 배우자 | 1,500,000 | ㉔ 종합소득세표준 | 7,224,930 | 기납부세액 | ㉕ 종(전)근무지 | 0 | 0 | 0 | |
| | ㉖ 부양가족 (0명) | 0 | ㉗ 산출세액 | 433,495 | | ㉘ 주(현)근무지 | 175,660 | 17,550 | 0 | 193,210 |
| | ㉙ 경로우대 (0명) | 0 | ㉚ 결혼세액공제 | 0 | ㉛ 차감 납부할액 | 18,330 | 1,840 | 0 | 20,170 | |
| | ㉜ 장애인명 (0명) | 0 | ㉝ 공제대상자녀 (0명) | 0 | | | | | | |
| | ㉞ 부녀자 | 0 | ㉞ 출산·입양자 (0명) | 0 | | | | | | |
| | ㉟ 한부모가족 | 0 | ㉟ 연금계좌세액공제 | 0 | 위 원천징수세액(수입금액)을 영수(지급)합니다. 2025년 03월 05일 징수(보고)의무자 함께***** (서명 또는 인) 세무서장 귀하 | | | | | |
| | ㊱ 연금보험료공제 | 1,075,070 | ㊲ 기부금세액공제 | 정치자금기부금 | | | | | | 0 |
| | ㊳ 종합소득공제 계 | 4,075,070 | | 고향사랑기부금 | | | | | | 0 |
| | 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| 0 | | 특례기부금 | | | | | | 0 |
| 우리사주조합 | | | | 0 | | | | | | |
| ㊵ 투자조출자등 소득공제 | 0 | 일반기부금 | 169,500 | | | | | | | |
| ㊶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| 0 | ㊶ 표준세액공제 | 70,000 | | | | | | | |
| | | ㊷ 외국납부세액공제 | 0 | | | | | | | |

㉔ 인적공제자 명세(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지만 적습니다. 다만,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)

| | | | | | | | | |
|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|----|----|--------|
| 관계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관계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관계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
| 3 | 이*** | 710116-***** | | | | | | |

※ 관계코드: 소득자의 직계존속-1, 배우자의 직계존속-2, 배우자-3, 직계비속(자녀·손자녀, 입양자)-4, 직계비속(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)-5, 형제자매-6, 수급자-7(코드1-6제외), 위탁아동-8 * 4-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.

작성 방법

-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으며, 국제표준화기구(ISO)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. (※ ISO국가코드: 국제청홈페이지→국제정보→국제조세정보→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)
- "징수의무자"란의 "⑤ 주민(법인)등록번호"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.
-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(휴업·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·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)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"⑭ 지급액"란은 「소득세법」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.
- "⑮ 비과세소득"란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(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·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)을 적습니다.
- "㉔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"란은 종교인소득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(별지 제37호서식(2))제2쪽의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항목의 "조합 등"란의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- ㊲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(종교 관련 종사자)에 대해서는 이 서식 제2쪽의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,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 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"㉛ 차감 납부할액"란이 소액 부정수(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)에 해당하는 경우 "0"으로 적습니다.
-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.

